

1. 개정이유

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는 한편,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경우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장품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01호, 2025. 4. 1. 공포)됨에 따라, 화장품의 날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(안 제3조 신설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 자료 등(안 제13조의2 신설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

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
- 전자우편: sunmilee@korea.kr
- 팩스: 043-719-340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(전화 (043) 719 - 3409, 팩스 (043) 719 - 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화장품의 날 행사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관세법」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
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
3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

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,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
제1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법 제28조의3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
중앙행정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의 제공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3조의2는 2026년 4월 2일부터
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(화장품의 날 행사 등) ① 국</u> <u>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</u> <u>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</u> <u>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</u> <u>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</u> <u>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</u> <u>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</u> <u>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</u> <u>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</u> <u>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</u> <u>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</u> <u>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직접구매 해외화장품</u> <u>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</u> <u>제공 요청) 식품의약품안전처장</u> <u>은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</u> <u>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</u> <u>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</u> <u>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관세법」 제241조제1항에</u> <u>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</u> <u>외화장품에 관한 자료</u> <u>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77조제6</u>

	<u>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</u> <u>3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,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</u>
제14조(권한의 위임)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14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9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 <u>9의3. 법 제28조의3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중앙행정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의 제공</u>
10. · 11. (생략)	10. · 11. (현행과 같음)